

제420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18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3)
-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

상정된 안건

-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8
-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8
-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8
-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8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8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8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3)	8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8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8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9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9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9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9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9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9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9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9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9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9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9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9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9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9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9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9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9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9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9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9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9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9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9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9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9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9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9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9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9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9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9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9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9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10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10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10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10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10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1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10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10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10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10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1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10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10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10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10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10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10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10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10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1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0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10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10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10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10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1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10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10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10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10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10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10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0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10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10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10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10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0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0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1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1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1)	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11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11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1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11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1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11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11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1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11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1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1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1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1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1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1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1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1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1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1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1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1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2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2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12

(10시)08분 개의)

○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심사를 하지 못한 지방세특례제한법 5-3권과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한 지방교부세법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보류 안건을 정리하여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친 후 일괄해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3)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1)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 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계속해서 출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법안 심사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위자료 5-3권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의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5페이지입니다, 연번으로는 68번이 되겠고요.

개정안은 매수·수용·철거된 종전 부동산 등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소재지에 종전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지역에 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자치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당 내용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반대급부로 양여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세법 제9조제2항과의 체계 정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취득세 감면 연장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부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추진하거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실시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과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시행자 및 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세 부담을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점 등의 재개발사업과의 공통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건설, 공공시설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의 공급 등 공공성 측면에서 재개발사업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검토입니다. 공공성 측면에서 재개발사업과 차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이런 경우에 노후 주택들을, 저희가 어제도 말씀하시면서 소규모주택업자들 살려야 된다, 지방에 빌라 짓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감세정책을 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파트 외의 다른 환경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감세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그런 소규모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비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건 자기들끼리 짓는 거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봐서 이런 노후 주택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아파트에 사는 것만이 정답이다라는 의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냐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힘든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소멸지역 이런 데서 우리가 조그마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단,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하고요. 말씀하시고 보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기한은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당 내용의 의결을 희망합니다.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일정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인데요.

감면 대상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 및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자 두 유형이 되겠고요. 감면 대상은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은데 분양가격은 12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내용이 특이하게 취득세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은 상당한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 지자체의 차별성을 인정할 것인지와의 여부 그리고 취득세 감면 한도의 40%의 적정성 그리고 분양가격 12억 원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종합적으로는 해당 법안의 의결을 희망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재개발도 있습니다만 재건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이 재개발과 유사하게도 공공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와 같은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고 임대주택 건설에도 기여하는 등 공적 기능을, 약간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공공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취득세율 관련해서는 재개발에 비해서는 감면율을, 재개발이 50%입니다만 조금 낮춘 40%에서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게 좀 특이하게도 조례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별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서울에서도 차이가 있고 해서 그 자치 실정에 맞게 조례로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주고자 하기 위해 조례로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오늘 이 건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관이 배석을 했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혹시 지금 뒤에 계시면, 말씀 주실 것 있으면 지금 하시지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위성곤 위원** 설명을 좀……

○**소위원장 윤건영** 설명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현정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한 원천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연간 장기 평균 기준으로 한 7만 호가량의 주택이 공급이 됩니다. 그중에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각각 1만 호, 1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같이 재건축에서도 도로나 공원 또 그리고 어린이집과 같은 기반시설들을 공급하고 있고, 특히 공공기여분에 대한 공공임대에 관해서는 SH공사 등에서 전량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가격도 토지는, 토지 부분은 무상 기부채납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표준건축비로 지금 인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공공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수준은 아니지만 재개발 수준이 50%이면 한 40% 정도 하는 감면을 하게 되면 도심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원천에서 보다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택가격의 안정,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감면율과 감면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적용을 배제해서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런 취지라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이런 부분들도 국토부에서 같이 검토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꼭 이렇게 조정대상 외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새로 취득세 감면을 할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도심에서 주로 많이 공급되는 공급의 원천이라는 점과 그다음에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에 관해, 서울에서 최근 5년간 6000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됐는데 그중의 4800호가, 그러니까 한 70% 이상에 대한 주택이 재건축에서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그런 제한들이 조금 완화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안부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양부남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지금 공공기여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여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여의 이러한 효과와 이 취득세 감면이라는 마이너스 효과를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 공사비가 3년간, 20년·21년·22년 3년 정도 간에 한 30% 이상 건설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보시는 것처럼 공사비로 인한 분쟁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도심에서 원활하게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들을 고려했습니다. 아울러서 감면되는 부분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용면적 85㎡의 경우에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한 호당, 저희가 보통 토지는 무상 기부채납을 하고 있고 표준건축비로 건축물 인수하는 경우에도 주택 인수 가격이 실원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감면하는 부분 대비 또 주택 공급에 미치는 궁정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양부남 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말씀뿐이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김현정 참고자료 부분은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우선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이달희 위원님……

○소위원장 윤건영 아, 이달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은희 위원님을 너무 좋아하나, 편애해서……

○이달희 위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간사로 승격시켜 드리네.

(웃음소리)

○이달희 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 경감 규모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통과시켜 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일괄하는 규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성곤 위원 예.

전체적으로 이 예상하는 감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위원님, 일단 국토부와 같이 추계한 것으로는 연간 906억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주택을 취득하는 국민들이 받는 1인당 혜택은 아까 담당 국장이 얘기했듯이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토부랑 행안부랑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건데요. 다른 재개발사업이나 여러 사업에서 실제 지금 정부가 다 규정을 하고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설계하면서 특정 혹은 일부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점차점차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경우냐면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서울도 죽고 지방도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부동산 경기인 경우는, 다른 경우는 보통 수도권이 살면 지방이 죽고 지방이 살면 수도권이 살고 어떤 특정 지역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일률적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제주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이 초기에 공급되어질 당시에 제주는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만 폭등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저는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취득세 4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하면 경기에 따라서 이것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적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검토해서 의견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안건은 서울이나 지방의 양극화라든지 살펴볼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 안건으로 넘겨 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5페이지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위기지역 내 광업·제조업·건설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아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전환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 대상 사업전환계획 승인일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전환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적은 점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수요조사 및 승인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일몰기한 연장을 희망합니다. 아울러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고용위기지역이나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상태이고 인구감소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조승환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이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하여 인구 유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 지정 해제 이후에도 적정한 인구 유입이 필요한 점, 창업하려는 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조항의 일몰기한이 25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아직 일몰이 미도래한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의원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아직 일몰기한이 내년이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승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승환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위성곤 위원** 하나만 첨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성곤 위원** 위기지역하고 그다음에 인구감소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이것 재원은 원래 지방정부 재원이지요, 지방세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거둬야 할 건데 그런데 정부가 감면을 일괄적으로 해 줘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자율권이 없어서.....

저는 이런 문제를 앞서처럼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끔 해 줘야,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세수가 더 필요하면 세수 걷어서 쓰고 그것에 대해서 더 대응을 해야 되겠다면 꺼야 주고 이럴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모두가 다 지방정부 예산인데 이게 중앙정부가 생색내는 일에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 코드에 맞춰서 통제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지방세 세입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 교부세로 나눠 주면 될 일인데 주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저는 행안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차관님께 촉구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용역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큰 틀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달희 위원** 저도 위성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성곤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가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캡투자를 통한 주택 투기 등 의도하지 않은 효과의 발생 가능성, 생활인구 증가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일몰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추징요건으로서 3년간 보유기간의 적정성 및 조례를 통한 취득세 추가 감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당 법안의 의결을 희망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흔히 말씀드리는 세컨드 홈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유사한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재산세 특례가 있고 양도세 그다음에 종부세 특례도 지금 함께 있고 일몰기한이 26년까지로, 관련 제도들이 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6년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다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26년까지 일단 일몰기한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환 위원** 지금 제가 갑자기 질문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역구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광역시·구 지역은 빠지는 것 그대로 가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시 지역은 빠져 있고 군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시 지역의 그것은 빠지는 걸로 가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조승환 위원** 계속 그것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것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세랑 굉장히 연계가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조승환 위원** 연계가 돼 있으니까 한번 쟁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1가구 1주택자, 무주택자에 한한 건데,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세컨드 홈이라든지 정책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렇다고 다주택자에 혜택을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유인책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통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실 여유가 되거나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해당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사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이 고향집을 다시 사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아마 주택이 2개가 필요하신데 이러한 혜택을 드리면 1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각종 종부세 같은 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 취지라고 할까 목적이 좀 분명한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생활인구라고 한다고 하면 청양군 같은 경우에 청양군의 어떤 집을 구입한다고 하면 자기 집 산 사람이 주중에 내려가고 주말에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야 생활인구가 증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캡투자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세를 주게 되면 그냥 주택만 하나 산 거지 생활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이게 목표가 잡혀 있어야지, 그렇게 되면 청양군 내에서도 서울 사람들이 선호하는 읍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주택 가격이 좀 받쳐 줄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더…… 또 지방 시장이 양극화가 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제가 기재부에 지금 세컨드 훔 관련해서 법안을 내놨는데요. 인구소멸지역 중심으로 해서 세컨드 훔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도록, 그러면 양도세나 종부세에도 카운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기재부의 지금 의견은 4억까지 캡을 씌워서 그 안에서는……

대체로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도 있는데 사실 읍과 동이나 이런 것하고 그 자체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데, 차이가 물론 있는데요 지금 시급한 것은 읍도 시급합니다. 지금 지역에 가 보면 수도권에서 상상하는 것하고…… 또 인구소멸지역 가 보면 전반적으로 읍까지 소멸하기 때문에 극약처방 여러 가지를 다 줘서 생활인구라도 유입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고향집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라도 고쳐서 가족들이 그것을 받아서 유산 상속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냥 별장처럼 어머니 살던 집을 할 수도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포함되고 또 그런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런 게 빈집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뭉쳐서 종합선물세트로 줘도 지방소멸지역이 생활인구라도 그나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온기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소위원장 윤건영** 이야기하시고……

○**조승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양부남 위원** 제가 할까요?

○**조승환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양부남 위원** 입법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입법 취지대로 생활인구가 유입될 것인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투기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담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는 어떤 담보·보완 장치가 전제되고 나서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에 의한 경우는 예외겠지요. 그러나 이것 유상 거래일 경우에.

○**이달희 위원** 그런데 지방에 내려가 보면 주택 경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다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전세라도 놓이면 그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정말 참담한 곳이 많거든요.

○**양부남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하는데 이러한 유입 촉진할 수 있는 담보·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내버려두면 투기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말씀드려도……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차관님 종합적으로……

○**조승환 위원** 저는 지금 인구감소지역이나 빙집 부분이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정책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캡투자가 되려 그러면 수요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요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빙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어촌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최대한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캡투자나 이런 걸로 인한 양도차익이 다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말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어쨌든 인구감소지역이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캡투자의 우려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울러 저희 이번 법 조항 중에 추징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사고판다든지 하는 것들을 방지하는 조항을 뒀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도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부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상업 목적 건축물 및 점포에 대해 2년 이상 공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납부 여력이 없는 상업용 건축물 및 점포 소유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실의 해소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 공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감면 기준 2년 이상의 공실 등 및 감면 배제 요건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적으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재산세를 재산 보유 자체에 대한 담세력 인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안 중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감면 배제에서 이분들이 감면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기 1회의 광고를 하셔야 되고 또 중개 의뢰를 하셔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재정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지 또 공실 여부가 있었는지, 광고 여부라든지 중개 의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 공실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이게 임대료 감면으로 다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기 공실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조승환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의견에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전조치 또는 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이행한 빙집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한 빙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빙집에 대한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함으로써 붕괴·화재사고 등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은 철거명령에 따라 빙집을 철거하게 되는 경우 빙집의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빙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관련 조치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빙집을 철거하게 되면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세금이 좀 인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인상이 되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 이게 지역에 가면, 지금 차관님은 인상이 됐을 때 토지가 있을 때 인상이 안 됐다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요, 철거를 하게 되면 나대지,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대지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는 세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높아지지 않도록 종전에 받던 재산세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캡을 씌워 놨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지

않는 효과를 발생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주민들한테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집을 저렇게 두냐 하면 뜯어내고 나면 나대지가 세금이 더 많아서 철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부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성범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나대지, 그러니까 현재는 건축분하고 토지분하고 합쳐져 있는 것을 캡으로 씌워 가지고 철거했을 때 비용 넘어가지 않도록만 하는 조치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조승환 위원 그런데 지금 신성범 의원안은 나대지에 대한 보유세, 일종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하자라는 것하고 그 취지가 다른 것 같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빙집 하나 철거해 가지고 한 나대지를 가지고서는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나대지가 주변이 계속, 결국은 빙집도 이게 스프롤처럼 퍼져 가기 때문에 빙집을 철거하다 보면 나대지가 몇 필지가 모이게 되면 이게 나름의 어떤 도시에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그러니까 나대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배려나 고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조항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할까요, 조 위원님?

○조승환 위원 당장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예, 보류하고요.

○조승환 위원 보류할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으로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해당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으로 정해 왔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분 감면 배제의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 유지 등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동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도시계획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급부 여부에 따른 감면율 차등의 경우에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은 구체적인 반대급부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가 제출한 의견입니다. 정부안은 의결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논의하시면서 아마 유사한 안건들을 보셨을 겁니다. 농어촌공사 게 있었고 토지공사 것 그리고 아마 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 등이 같은 내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은 재산세에서 50%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 감면율 줄이는 내용이고 취득세 관련해서는 이미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개발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담세력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안을 만들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어제 우리가 이 반대급부 관련한 다른 기관들이 보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한국농어촌공사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것은 보류됐습니까, 아니면……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보류됐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이것도 보류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성격이니까요.

다음 안건 부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0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24년 6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회 논의 사항입니다.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할 때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조승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공급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기업 부채상환용 토지매입 정책의 효과성 그리고 지방세수 감소 정도 및 일몰 기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당 법안의 의결을 저희는 희망합니다.

어쨌든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의 부동산을 토지공사가 매입해서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들이 이미 토지공사법에 관련 조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말씀 주셨고 위원님들 의견 계신가요?

○김성희 위원 부채가 생긴 것은 기업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기업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 준다고 하면 내년에 또 어디 가서 부채를 일으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방세수를 깎아 가면서 해 줄 이

유를 잘 모르겠고요.

해당 기업이 토지를 내놓으면 한국토지공사만 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다른 개인이나 기업들이 토지를 사 갈 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깎아 준다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기업의 활동이 이윤이 생겼을 때 뭐 더 들어오는 게 없는데 어려울 때마다 국가가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특히나 세금을 줄여 가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이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에, 특수한 경우로 보고 있고요. 아울러 이것은 정상화가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 LH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의 토지개발이 면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지역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사업을 진행하게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취득세를 받거나 재산세를 받는 것이 지역경제 입장에서는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 위원 임대주택 정책은 1년에 4, 5조씩 깎아서 LH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정부가 이것은 또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분양의 목적으로 공공시설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공시설물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과 유사한데요. 일몰기한 연장, 도시지역분 감면 배제, 반대급부 여부에 따른 감면율 차등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반대급부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전에 이것도 반대급부가 확실히 있는 이슈라 보류해서 같이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7페이지입니다. 연번 81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사업시행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탁자가 지방세법 제7조 4항에 따른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자금조달 방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당권 설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감면받는 것과 동일하게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도 간주취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담보신탁의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 시 신탁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사실상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탁자에 대한 감면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산업단지 외에도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 사업시행자를 감면 대상자로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신탁 방식을 통한 사업 시행 현황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적으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여기 취득세 감면 검토의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의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관광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 재건축 등 매우 다양한 형태에서의 신탁이 적용되고 있어서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해당 의원님 실에는 이 해당 저희 상황을 드리고 양해를 받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정부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해당 의원님도 양해를 받았다고 하니까 정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소위원장 윤건영 수석전문위원 말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산단에 관계된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그분들께서 의원실에 민원 제기해서 법률안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과연 수탁자를 시행자로 보지 않는 이 조항이 공공의 책임이 없는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신탁의 경우에 간주취득 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공공 부분이 인식했다고 하면 그 인식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실질과세 원칙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미인식했다면, 알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알았을 때 이것을 개정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했을 때 서둘러서 법률 관계를 확정해 주지 않게 되면 이것을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을 짜겠다고 하게 돼서 만약에 이게 6월 달이 되든, 내년이 됐을 때 이게 또 소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급 적용 가능성 때문에 누군가는 또 억울한 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 때 매듭을 지어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희 위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를 하고요.

○이달희 위원 보류를 합시다.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0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취득·보유하는 경우의 감면율 수준으로 상향하고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주를 목적으로 한 사업시행자와 일반 입주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에 따른 개발이익의 수혜대상자로서 입주기업에 대한 분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비교적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단지 조성 및 분양·임대 등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원 중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단계마다 초기 조성 단계·분양 단계 여러 최소한 네 단계 이상에서 지금 감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하는 기업들은 대개 중소기업들이고요. 이분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조승환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시거나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제78조제8항 후단을 삭제하여 법률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조례 감면은 조례 감면에 관한 총량 제한 등 일반적 조례 감면에 관한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제78조제8항 후단은 관련 내용을 충복하여 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 및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9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항공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민국 의원님 안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른 특화단지 내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박대출 의원님 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동 법률안에 따른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법인·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안입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게 되면 현행법 제167조의2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법과 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7페이지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과밀화 문제 완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및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기한은 통상 3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기한 연장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1페이지입니다.

5건의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이전을 촉진해서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인구의 분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으로 정해져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결을 희망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 대상인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기업의 업종을 현행 법률로 정하고 있던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업종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창업 업종을 탄력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창업 업종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대상을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현행법에서는 법률에서 직접 업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현행 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가 제출한 의안입니다. 의결을 희망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특구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기존의 틀에, 규정하고는 조금 다른 자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융특구를 좀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도심용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용합특구 내 창업·이전기업이 창업 또는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창업·이전기업·사업시행자가 도심용합특구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또는 도심용합특구개발사업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설과 관련해서는 2026년 이후의 경제환경 및 지방재정 상황 등과 도심용합특구의 관계 부처가 기업·대학·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는 점, 도심용합특구는 성장기반을 갖춘 주요 도시의 도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감면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용합특구를 좀 말씀드리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 판교와 같은 그런 지역을 만드는 특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월말에 최종적으로 특구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자체 단위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이 법안이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부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거주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며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추징사유를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입점상인이 안정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담세력 정도, 시장정비사업과 유사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재산세를 제외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면대상 명확화 부분입니다.

시장정비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재개발사업에서의 취득세 감면 대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징규정 요건의 보완 부분은 입점상인의 경우에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추징하도록 해서 현행법상의 기간인 3년보다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에 빠른 시점에 입점해서 영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가 제출한 의안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을 하고 감면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의 구입 및 생활인구의 증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이게 수도권 외의 지역 전체하고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좀 포괄적이고 아마 자치단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 등으로 재산권 행사 등이 불가한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법률 등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결을 희망합니다.

장기 미집행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거·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적용받을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재산 보유 그 자체를 담세력으로 보아 매년 과세되는 조세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철거·멸실되지 않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재산세의 성격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재산세의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울러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빙집이나 개인주택 대수선하는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세율이 아마 다주택자나 굉장히 가격이 높은 주택에는 혜택이 가고 1주택자와 또 가격이 낮은 것에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말씀

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2주택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그 2개의 주택 중 1개에 상시거주하는 경우 다른 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상시거주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를 2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이 과도한지 여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지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2주택을 선택한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뿐만 아니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검토입니다.

종전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는 경우는 결국 그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라고 봐야 할 거고요.

아울러 국세의 경우에는 이렇게 2주택을 선택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의 정합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9페이지에는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공사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해서요. 일몰기한 연장 부분 또 지방공사가 받은 구체적인 반대급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0%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앞서 논의해 주셨던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감면입니다.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도 보류해서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1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전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특례를 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소득세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2014년에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재정의 보전 등을 위해서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 관련된 부분은 지방세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그리고 법상 제한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내용 한번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자산 상실 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비율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10%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의 개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9페이지,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이것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우선 개정돼야 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국세가 선행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3페이지, 개정안은 수도권과 밀역제권역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이 수도권 밖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해서 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신설된 지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법인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검토하자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5년까지 지방세감면 특례를 운영한 뒤 지원 효과, 지방재정 영향, 정책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25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분납을 허가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또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4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의 최소납부 배제 요건을 2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개정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최소 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최소납부 적용배제 기준 완화입니다. 일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특성 그리고 그 사업의 어려움 등 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취지는 다소 타당한 측면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최소납부 적용을 배제하는 생초 주택구입 그리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를 통해서 국민 주거 생활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온전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의 일관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개세주의, 조세형평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로서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만 적용배제 기준을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적용배제 부분은 현행법상 최소납부세제 적용 예외 현황을 살펴보면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공익성이 매우 큰 분야에서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기준을 현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부동산투자기관이 과밀억제권 내에서 부동산 취득 또는 회사설립 시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하는 것은 2000년 10월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은 부칙에 따라 효력이 종료된 상태이고 유효기간 내에 설립되었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현재 모두 해산한 상태라서 법 적용 대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의 부칙을 저희들이 개별 조문에서 다 다루었기 때문에 이건 총괄적으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1조(시행일)부터 11조까지는 정부안과 같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157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의견으로 신설이 필

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 제3항에 따른 선박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의 해당 선박의 취득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문장인데요.

지금 천연가스 화물운송용 선박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시행이 되게 되면 계약은 2024년 올해 계약이 돼서 취득하는 것은 2025년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약한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둔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똑같이 이번에 일몰이 되는 것 중에 천연가스버스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천연가스버스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천연가스 화물용 선박에 대해서만 경과조치를 둔 이유는 화물용 선박의 경우에는 그 계약금 지급을 했다든지 하는 어떤 계약서에 대한 신빙성이 좀 높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천연가스버스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어서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소방청에서는 배덕곤 기획조정관이 배석했습니다.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분야·안전분야 재원배분 규정의 일몰 기한 폐지여부 결정 및 배분비율 조정, 세 번째 소방분야 내 배분비율 조정, 교부권한·절차 변경 또는 명칭 변경 등의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을 보시면 총 재원은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현행 유지를 대체로 말씀하셨고 신정훈 위원장님께서는 77.99%로 확대, 상향하는 안을 내셨습니다.

배분비율 부분입니다.

현행은 담배분의 40% 이상 대 5% 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김상욱 의원님은 42% 대 3%로 조정을 하시고 대신 소방분야 중 소방관 수당에 2%를 두시는 게 되겠고요. 용혜인 의원안은 많은 45% 대 0으로 소방분야에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희 의원님의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하되 15%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을 허용하고 계십니다. 신정훈 위원장님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1.495% 대 26.495%로 되어 있습니다.

일몰기한이 현행은 24년 말, 올해까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폐지하는 내용으로 안을 내 주셨고요.

교부권한에 있어서는 현행은 행안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분야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상욱 의원님 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소방분야는 소방청장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윤건영 간사님 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소방분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방청장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안은 소방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달희 의원님 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소방분야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용갑 의원님 안은 소방청장과 행안부장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명칭입니다.

현행은 소방안전교부세인데요. 용혜인 의원님 안은 소방교부세로, 그리고 박용갑 의원님 안은 소방교부세·안전교부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 관련된 신정훈 위원장님 안입니다.

입법취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개별소비세 담배분의 45%에서 77.99%로 확대해서 분야 배분비율을 51.495 대 26.495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77.99%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담배분의 77.99%라는 숫자는 담배분 중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비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국고로 귀속되는 잔여분을 모두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때 도출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51.495 대 26.495%라는 숫자는 확대된 재원에서 소방분야 중 인건비 재원을 빼고 난 금액을 소방분야·안전분야가 절반씩 나눠 가질 때 도출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안전분야 배분비율 조정에 앞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국고 수입의 감소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안전분야 배분규정의 일몰기한 폐지 여부 및 배분비율 조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몰기한 같은 경우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폐지를 안으로 내셨고요. 배분비율에 있어서는 앞의 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하십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 폐지·연장 및 소방분야 배분비율 유지·확대에 찬성 입장은 소방분야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7~22년간 인력이 약 40% 증가해서 재원 부족이 심화되어 있고요. 지출 소요를 봤을 때 3000억 원 이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전분야 대체재원이 충분하다는 의견인데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 안전분야 일반재원이 존재하는 데에 반해서 안전분야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은 1061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배경을 먼저 보면 14년 세월호 참사 등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서 도입 취지상 소방에 한정하지 않고 재난안전분야 전반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15년 도입 당시부터 소방·안전분야 모두 포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재난안전 대응 재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용도를 안전분야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설정한 후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방관 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 신규 배분 문제인데요.

소방공무원의 화재진화수당과 위험근무수당이 각각 01년과 16년 이후 재원 부족으로 동결 중인 상황에서 해당 수당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수당의 지급주체인 지자체들은 소방안전교부세 전체 재원의 확대 없는 수당 인상은 다른 소방시설·장비 확충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권한 및 명칭입니다. 표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찬성 입장은 지역별 소방시설 현황 및 투자 소요 등에 대한 전문성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방청장 의견청취 절차가 있으나 직접 교부하는 것에 비해서 불필요한 정책 시차 및 행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반대 입장은 재난안전관리, 지방자치 및 지방교부세 행정의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여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시에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아닌 안전정책실에서 교부권을 부여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에 관해서는 재원 소방분야 전액 교부 여부 및 소방분야에 대한 교부권한 이관 여부 등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먼저 6페이지의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확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신중검토입니다. 재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국가 재정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페이지의 소방분야·안전분야 배분규정의 일몰기한 폐지 여부 및 배분비율 조정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소방과 안전분야 배분비율을 법제화할 경우에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효율적인 대처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소방안전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에 전액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므로 지역별 재정 여건 또 소방·안전 투자 수요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사무인 소방사무 관련해서 시도에 의견조회를 해 본 결과 17개 시도 모두가 특례규정 일몰에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 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 신규 배분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수당 인상 등 소방직에 대한 추가 처우개선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재정 여건 및 또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한 및 명칭 관련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한 유형으로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소방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소방분야 예산임을 고려해서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소방청에서도 나왔으니까 소방청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곤입니다.

소방청에서는 분야별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75% 이상을 법률에 규정해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권한에 대해서는 교부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님이 가지시되 현재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 현장의 의견이나 소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에 따라서 교부하는 쪽으로 교부권한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행안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과 안전분야의 배분비율을 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조회를 했다고 했지요, 차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의견조회가 매우 왜곡됐어요. 각 위원님들 책상에도 이 자료를 배포했는데 이게 안전분야 담당 부서에다만 의견을 조회했다는 걸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왜 이렇게 왜곡된 의견조회를 했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례규정 일몰에 관련해서 지난 9월 달에 17개 시도 안전 부서를 통해서 의견조회한 것은 맞고요.

○**양부남 위원** 아니, 소방분야에도 물어봤어야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보완했냐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 금년 10월 달에 저희가 다시 의견을……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그 의견조차도 매우 왜곡됐고 일방적이었다는 게 본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행안부에서 의견 수렴할 때 수신란에 보면 전부 안전분야 담당자만 상대로 의견조회했어요. 매우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

하신 대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런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있는 현상 그대로 필요성을 판단해야지,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왜곡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시도지사협의회에 저희가 의견조회한 것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 이렇게 된 거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각 시도의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통보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행안부에서 기획조정실에 다 전화했지요, 반대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양부남 위원** 그것 내가 파악했는데.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이걸 찬성하라, 반대하라……

○**양부남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아니,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양부남 위원** 그런 식으로 왜곡되게 하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위원님, 저희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내가 수사할 수도 없고 말이야.

(웃음소리)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부남 위원** 기획조정실에 전화해서 전부 반대하라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토론하면 결론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절차상에 양부남 위원님 의심하시듯이 막 시켜서 안 하더라도 결론은 이렇게 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도지사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물으면…… 제가 지난번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시도지사들은 우리 당 소속이 많으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표시 나는 일에 쓰고 싶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정너입니다. 양부남 위원님께서 막 ‘느그 왜곡해서 이렇게 잘라 왔지?’ 안 해도 답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면 되냐고요.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말씀하십시오.

○**배준영 위원** 안전본부장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말씀하시지요.

○**배준영 위원** 소방이 국가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아직 지자체 재정에 의지하고 있고 국비 지원은 12%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청사진 없이 그냥 소방에 관련된 이런 재원을 줄인다고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국가직에 상응하는 정부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한 것도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사무는 지금 광역자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가 아니고.

○**이달희 위원** 국가직으로 만들어 놓고……

○**배준영 위원** 참 묘하네. 그러면 국가 재정은 12% 정도로 둑어 놓고 더 이상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무하고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지금 달리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재원 충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행안부차관입니다.

전체적인 재정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라고 해서 담배소비세의 일정분율, 한 9000억 정도, 1조 정도를 지방에 교부세의 이름으로 드리게 됩니다.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재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시도는 소방특별회계법, 소방회계법이라고 하는 별도 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를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의견을 듣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특별회계의 법적인 편성권자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논의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소방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7.7조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1조 정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5.5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7조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총액은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다면 이 안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입금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를 어떻게 늘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제약도 있다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장비 노후화율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퍼센티지로?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지금 현재는 노후화율이 매년 연말이 되면 도래를 하기 때문에 10%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0% 이하?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예.

○**위성곤 위원** 노후화율이 그렇게 좋아요? 노후화 정도가 그렇게 낮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치가 좋네. 장비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노후화율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소모성 소방장비가, 부품이 있고 내구연한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5년이면 5년 지난 후에 바꿔야 되고 10년이면 10년 지나면 바꿔야 되는데 노후화율을 어떻게 측정한다는 거지요, 10%라는 게?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후화율이 계속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것을 몇 프로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가 있으면 그게 노후장비로 됐다가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면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요.

저희가 노후장비 해소를 위해서 도입된 소방교부세가 결국은 일몰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일몰제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 게 소방장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체 문제, 보강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항구적으로 투입돼야 될 재원이지 일시적으로 투입돼야 될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몰제로 가는 거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한 취지는 위성곤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노후화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퍼센트가 잘못……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비로 돈이 갈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한 말씀만, 저희가 대안 준비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방에 대한 안전, 투자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필수소방장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자체 예산 운영 기준에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소방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는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이미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이 관련 내용들을 넣게 되면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을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2025년도 시도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니까 거의 모든 시도가 75% 이상 그 비율을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에서 편성할 때는 금년 말로 일몰될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뱃세는 목적세인데 우리가 담배를 한 개비를 피우면 73%가 세금이잖아요. 그중에 지방세·국세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국세 중에서 담배개별소비세 가지고 소방안전교부세·내국세 이렇게 나누고 그 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인건비·소방안전사업비, 내국세에서 보통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참여분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기재부하고 해서 소방인력도 늘었는데 담배개별소비세의 참여분을 다 가지고 오는…… 그래도 담배 전체의 13.2%밖에 안 되는데, 또 지방교육세하고 보통교부세의 22% 빼면 이 중에서도 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한 60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잔여분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처럼 구조를 말씀드리면 담배 4500원, 4000원에 세금이 3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000원이 되고요. 그중에 지방교육세, 지방세가 한 1400 원 정도,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그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국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담금, 건강증진부담금이라고 또 별도의 부담금들로 크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님 주셨던 것이 개별소비세인 국세 중에 있는 담뱃세를 지방으로 돌리자는 말씀을 주셨고요. 어제 오늘 논의하셨던 것 중에 아마 담배 관련된 세금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합성니코틴 관련 내용도 있었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 또 몇천억 정도가 더 아마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배와 관련된 부분들에 이달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만간 이른 시기 내에 다시 한번 재설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정부 내에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달희 위원** 조만간 심도 있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몇 년이 갈지 우리 차관님하고 국장님 바뀌면 또 제로 베이스로 고무줄 제자리 돌아가듯이 또 돌아가서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법안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보기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굉장히 경직성이 있어서 매번 점증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도 이미 안전차관 얘기했듯이 75% 이상 반영이 돼 있고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방사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방안전교부세를 2015년도에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취지 등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달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취지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잘들 아시겠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요새 많이 좀 어렵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재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자율재원인 거고요. 지자체의 시도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이달희 위원** 지자체의 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위성곤 위원** 아니, 본부장님, 이게 자율계정이에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법을 처음 만들 때 자율계정이 아니라 칸막이를 막아서 소방에 쓰게 만든 계정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예, 물론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소방에 얼마나 투입할지, 안전으로 투입할지 결정하니까요.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걸 자율계정이라고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전부 다 처음부터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준 게 아니라 소방이 국가직화 되면서 장비 부분과, 장비 부분의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걸 칸막이를 만든 거잖아요. 그 칸막이의 유용성

이 지금도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율계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까지도 칸막이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지자체에 가게 되면 이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소방분야에서 안전분야로 꺼내서 여러 가지 쓰겠지요. 학교 앞 도로 라든가 아니면 노인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방분야는 결국은 현실적으로 처우개선과 그다음에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왔던 정책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분야를 늘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다른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안전 세를 신정훈 의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담뱃세를 늘린다든가 담뱃세 중에 일부를 좀 더 증액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오시고 논의를 해야지 있는 부분에서 자꾸 빼려고 하면 논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5년도 예산편성안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 이상 대부분의 시도가 예산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금년 말에 관련 규정이 일몰된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치단체장들께서도 대부분 소방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달희 위원** 그럼 법제화 해 드려도 별 문제가 없겠네요?

○**위성곤 위원** 그런데 그거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치단체의 어떤 재원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위성곤 위원** 아니, 잠깐만……

○**박정현 위원** 행안부가 언제부터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요구했습니까?

○**양부남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건영**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시고……

○**양부남 위원** 잠깐만, 잠깐.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요.

○**위성곤 위원** 본부장님, 이게 전부 자치단체 자율을 역행하는 일이에요.

○**박정현 위원** 행안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성곤 위원** 이 서류 자체가……

○**양부남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게 된 배경은 소방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겁니다. 그 배경에서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탄생을 했고 그리고 내버려뒀을 경우에 지자체장들이 이 돈을 가져다가 즉시 효과가 나타나고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는 안전분야에 이걸 쓸 것 같아서 칸막이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75% 이상을 배분한 시도도 많이 있습니다. 일몰규정이 이제 다 되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일몰규정이 폐지되고 이걸 자율에 맡기면 이렇게 할 시도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소방관들의 처우 라든가 소방행정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비율을 저 같은 경우는 75%를 유지하자고 했던 것은 그러한 75%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요가 나온 것이고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필요성이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소방장비를 한번 들여왔을 때 한번 들여와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내구연한이 끝나면 똑같은 소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장의 선의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방안전세가 생긴 목적과 배경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이걸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소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소방관들이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박정현 위원님 하실 말씀……

○**박정현 위원** 아까 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그러면……

○**박정현 위원** 행안부가 마치 지방정부를 배려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규탄 발언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오후 회의에는 안전본부장이나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참석 안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혹시 두 분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달희 위원** 저는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이달희 위원** 신정훈 위원장님 안에서 담배개별소비세에 내국세 잔여분이 33% 정도 되는데 이거 반드시, 소방 인력 늘리고 국가적으로 해서 이 돈은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지방에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될 일들인데, 지금 잔여분이 해마다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혹시? 한 6600억, 6000억 가까이 되던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주로, 건강증진 분야에 특별회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원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건강증진부담금이 9.1% 따로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 부분도 쓰고요. 어쨌든 건강 관련된 특별회계가 따로 국가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원으로 쓰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도 보고, 담배개별소비세 전체도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나라 전체에서, 국가 전체에서. 소방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사업비에서 소방분야의 비율을 어떻게 하더라도 정리해서 내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본부장님과 조정관님, 본부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조정관님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제가 먼저 할까요?

○**소위원장 윤건영** 예.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저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요. 저희는 재난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을 하나의 식구,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대적인 세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유지해야 되는 이유 관련해서도 저는 지방교부세의 본질, 특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양부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의 발생 취지를 고려할 때,

이게 세월호 사고 후에 만들어진 사안인데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는 바다 위에서 난 겁니다. 이건 수상 안전을 포함한, 물론 화재 다 포함되겠지요. 다 포함한 전체적인 재난안전 사고의 대비를 위한 그런 목적,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당초의 취지를 좀 존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배덕곤** 저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자율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소방안전교부세가 도입되고 저희가 75% 또 그다음에 소방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또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소방 인력이나 장비의 편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 일몰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물론 정확한 팩트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과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미 일부 시도에서 75% 이하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마 비율이 폐지가 된다면 저희가 과거에 소방안전교부세,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 그리고 지방 소방 재정의 열악성 또 그리고 국가직화의 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최소한 현행 수준 이상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에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오후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0인)**

김성희 박정현 배준영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달희 이성권 조승환 한병도

○**청가 위원(1인)**

정춘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현정

소방청

기획조정관 배덕곤